

기관명

수 신

(경유)

제 목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송부
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른
보훈특별고용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.

제 호		보훈특별고용 통지서				
고용 의무자	업체등명					
	대표자명			전화번호		
	소재지				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	보훈보상대상자 와의 관계		
	성명			생년월일 (성별)	()	
	주소				전화번호	
	학력			전공		
	자격·면허			고용직종		
붙임: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5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 1부.						
※ 유의사항 1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5항에 따라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30일 이내에 고용하여야 하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보훈특별 고용 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붙임의 취업자 통보서[서식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(http://job.mpva.go.kr)에서 제공]를 보내야 합니다. 2.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						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	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	서명	결재권자	직위(직급)	서명
협조자			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		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			
우	주소			/ 홈페이지 주소				
전화번호 ()			팩스번호 ()		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			/ 공개구분